

문서번호	감사실-5102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9.08.2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24호

★대리	팀장	감사실장	상임감사	이사장
협 조				

감사규정 등 일부규정 및 내규 개정안

2019.

감사규정 일부개정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 시민옴부즈만설치및운영에관한내규 개정·공포(2015.3.4., 2019.7.4.)에 따른 「감사규정」 옴부즈만 명칭 정비

2. 주요내용

- 상이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옴부즈만 명칭 통일 (안 제12조의4)
 - [현행] 청렴옴부즈만 → [개정] 시민옴부즈만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 차기 이사회시 개정사항 보고

- 제10조 ① 다음 각호의 규정에 대한 개폐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법령, 정부지침, 정관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거나 그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고 이사장 결재로 개폐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청렴옴부즈만”을 각각 “시민옴부즈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4(청렴옴부즈만 제도) ① 공사,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의4(시민옴부즈만 제도) ① 공사,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제 안 요 지)

1. 제안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19.5.14.)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및 별지 제1호 서식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조문 정비 등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로 조문 삭제 및 수정 (안 제6조)

현 행		개 정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 삭제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삭제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삭제

- 적극행정 면책 제외 대상 완화 (안 제7조)

현 행		개 정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	- 삭제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삭제
-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 삭제

- 조문 수정·보완 (안 제10조, 13조)

현 행		개 정
- 제10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감사실 팀장급 직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 제10조(위원회 구성) 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 적극행정 면책요건 및 제외 대상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별표1호, 별지2호 및 3호 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2019.5.14.)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규정

나.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중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을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1호부터 3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중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로 한다.

별표 제1호, 별지 제2호에서 제3호까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면책신청 안내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 감사를 받은 부서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내 용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감사실장 귀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피 감 사 부 서 명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신 분 상 조 치	
비 위 내 용	

구 분	신청사유	검토의견
<p>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p>		
<p>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p>		
<p>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u>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u></p> <p>4. (생략)</p> <p>②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p> <p>1.(생략)</p> <p>2. <u>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u></p> <p>3. <u>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u></p> <p>4. <u>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u></p>	<p>제6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삭제)</p> <p>4.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현행과 같음)</p> <p>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p> <p>3. <삭 제></p> <p>4. <삭 제></p>
<p>제7조(면책 제외)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u></p> <p>2. <u>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u></p> <p>3. <u>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u></p> <p>4.~8. (생략)</p>	<p>제7조(면책 제외) -----</p> <p>-----</p> <p>-----</p> <p>1. (삭 제)</p> <p>2. (삭 제)</p> <p>3. (삭 제)</p> <p>4.~8.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② (생략)</p> <p>③ <u>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감사실 팀장급 직원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호선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	-----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실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13조(간사) ----- **간사 1인을 두되**, -----

[별표 1] (채조 관련)(신설 2016.7.12)

면책신청 안내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부서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인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별표 1] (제8조 관련)

면책신청 안내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부서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별지 제2호 서식(제13조제2항 관련)](개정 2016.7.12)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내 용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는지 여부	
5.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부서명 직 급 성 명 (인 도 인)

감사실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14조제2항 관련)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내 용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부서명 직 급 성 명 (인 도 인)

감사실장 귀하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제15조 관련)(개정 2016.7.12)		[별지 제3호 서식](제15조 관련)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피 감사 부서 명		피 감사 부서 명	
건 명		건 명	
신청 인		신청 인	
실사 대상 자		실사 대상 자	
신청상 조치		신청상 조치	
비위 내용		비위 내용	
구분	신청사유	구분	신청사유
	검토의견		검토의견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고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위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